

품목분류
CASE 1 철강제 수송용 탱크

판정번호
H351314

물품 정보

용도

- 비인화성 액체 운반용
- 픽업트럭 적재함에 부착 사용

구조

- 직사각형 철강제 탱크
- 기계적·열적 장치 미포함

CBP 판단

- 훅·링·캐스터·받침대 등 장착구 미포함
- 차량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사용

제8609호 컨테이너 분류 요건 미충족

- 특정 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호가 존재하는 경우,
덜 구체적인 호로는 분류할 수 없음

부분품보다 철강제 용기가 구체적인 표현

쟁점 HS



제 7309 호

철강으로 만든 탱크·용기

제 8609 호

컨테이너

제 8708 호

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

미국 HS-CODE 결정

7309.00

철강제 탱크



품목분류 CASE 2 오일 포집 기구

판정번호
H355020

물품 정보

용도

- 오일 필터 교체 시 잔여 오일을 포집하여 누유와 오염을 방지

구조

-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된 버킷 형태의 플라스틱 바디 부분과 철강제 리벳이 결합된 구조

쟁점 HS



제 3926 호

기타 플라스틱 제품

제 7318호

철강제 리벳

CBP 판단

- 쟁점물품의 구성요소(플라스틱 바디, 철강제 리벳) 중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의 결정 방법
 - 물품의 주된 기능은 잔여 오일을 포집하여 유출을 방지하는데 있으며, 플라스틱 바디에 의해 수행
 - 철강 리벳은 플라스틱 바디를 연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한정
 - 구성 요소의 용적·수량·중량·가치를 모두 고려

플라스틱 바디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



미국 HS-CODE 결정

3926.90

플라스틱 제품

품목분류 CASE 3 카라비너

판정번호
N357279

물품 정보

용도

- 사용자나 장비를 안전하게 연결·고정하기 위한 커넥터

구조

- 게이트에 나사식 잠금 장치가 있는 금속 걸쇠
- 금속·플라스틱 복합성분

쟁점 HS



제 9506 호

운동용 물품

제 7616 호

알루미늄 제품

CBP 판단

- 신청인은 카라비너의 용도를 등산 등 스포츠 용품으로 주장했으나, CBP는 다용도 제품으로 판단
 - 제품설명서 상 **고충 작업자에게 유용**하다는 설명 존재
 - 스포츠용으로 설계·판매되는 카라비너가 실제로는 스포츠와 무관한 다양한 목적에도 사용되는 사례 확인

스포츠 이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제 9506호 배제

미국 HS-CODE 결정

7616.99

알루미늄 제품



품목분류
CASE 4 CV조인트 부분품

판정번호
N357169

물품 정보

용도

- 자동차 부분품(CV 조인트 어셈블리)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

구조

- 어셈블리의 철강제 부품 4종 (볼, 케이지, 아우터 레이스, 이너 레이스)

CBP 판단

- CV 조인트 어셈블리 전체는 차량용 부분품 분류 가능성
- 쟁점물품은 CV 조인트의 하위 부품으로, CV 조인트 (차량 부품)과는 별개로 품목분류 판단 필요
- '부품의 부품' 논리를 사용하여, 쟁점물품을 차량용 부분품 품목번호 분류 배제
- 각 부품의 명칭, 재질, 용도 등에 따라 해당하는 개별 품목번호에 분류

부품의 부품 논리 적용, 차량용 부분품 분류 배제

쟁점 HS



제 8708 호

차량용 부분품

제 8482 호

볼 베어링, 롤러 베어링

제 8483 호

전동축, 전동용 부분품 등

미국 HS-CODE 결정

볼: 8482.91

케이지: 8482.99

레이스: 8483.90

품목분류
CASE 5 배터리·충전기 세트

판정번호
H342925

물품 정보

용도

- 전동공구(드릴, 톱 등)의 전기 공급을 위한 배터리·충전기 세트

구조

- 배터리와 충전기로 구성
 - ① 배터리: 전용 전동공구 전기 공급
 - ② 충전기: 세트의 배터리 전용

쟁점 HS



제 8504 호

변압기·정지형 변환기

제 8507 호

충전기

신청인 주장

- 세트의 본질적 특성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에 있음
- 소비자는 쟁점물품을 배터리의 기능을 보고 구매
- 세트 전체 가치 중 배터리가 약 63%를 차지

쟁점물품은 배터리가 분류되는 제8507호 주장

CBP 판단

- 배터리는 전용 충전기를 통해서만 충전 가능(충전기가 없다면 재사용 불가)
- 일반적으로 충전기는 배터리보다 내구성이 높음
- 소비자의 구매 동기는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에 있음

배터리가 아닌, 충전기가 본질적 특성을 부여

미국 HS-CODE 결정

8504.40

정지형 변환기

품목분류 CASE 6 사전 설치 키트

판정번호
N358520

물품 정보

용도

- EUV(극자외선) 반도체 제조 장비 설치를 위한 키트

구조

- 서비스 플로어와 서브 조립품으로 구성
 - ① 서비스 플로어: 장비 지지 기반 플랫폼
 - ② 서브 조립품: 밸브, 파이프, 호스

CBP 판단

- 키트는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(반도체 제조 공장)에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된 상태

통칙 제3호 나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

- 단순한 제조 장비 지지물이 아닌, 진동 저감, 장비 구성요소 간 공기·수냉·센서 데이터·레이저 펄스 등 장비 동작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

반도체 제조 장비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인정



쟁점 HS



제 8486 호

반도체 제조 전용 기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

미국 HS-CODE 결정

8486.90

반도체 장비 부분품

품목분류
CASE 7 팔렛타이저

판정번호
N358311

물품 정보

용도

- 화물을 빈 팔레트 위에 자동으로 적재하고 래핑하는 시스템 장비

구조

- 경사 컨베이어
- 적재 챔버
- 팔레트 디스펜서
- 랩핑 기기
- 상단 조작 기기

쟁점 HS



제 8422 호

포장 기계

제 8428 호

권양·취급·적하용 기계류

CBP 판단

- 화물을 팔레트 단위로 집적하는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가 상호 연결

제16부 주4 기능 단위 기계의 요건을 충족

- 화물을 팔레트 위에 적재하고 랩핑하는 기능을 제8422호의 용어 상 공정(충전, 실링, 밀봉 등)으로 볼 수 없음

빈 팔레트에 화물을 집적하는 것은 포장이 아님



미국 HS-CODE 결정

8428.90

권양용·취급용 기계

품목분류
CASE 8 장식용 인조나무

판정번호
N357865

물품 정보

용도

- 할로윈 축제 장식용 인조 나무
- 높이 약 3피트(약 91cm)

구조

- 플라스틱 받침대
- 금속 튜브(기둥)
- 플라스틱 가지(솔잎 형상)

쟁점 HS



제 9505 호

축제용품·카니발용품

제 6702 호

인조 꽃·잎·과실 제품

CBP 판단

- 쟁점물품은 할로윈 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, 할로윈과 직접 연관되는 모티프를 사용하지는 않음
- 통상적으로 나무가 할로윈 장식으로 인식되지 않음

할로윈 축제를 모티브로 하지 않은 단순 장식품

-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받침대, 기둥, 플라스틱 가지 중 나무 외관을 이루는 가지 부분을 핵심 요소로 판단

인조 잎이 분류되는 제6702호로 품목번호 결정



미국 HS-CODE 결정

6702.10
인조 잎 제품

원산지 CASE 1 자율조리기기

판정번호
H351954

물품 정보

용도

- 음식 조리 과정을 자동화하는
가정용 자율 조리기기

구성

- 대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중국산
- 소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중국산
- 인덕션 버너 중국산
- 전동 교반 장치 중국산
- 카메라·LED 시스템 대만산

CBP 판단

- 5개 구성요소 모두 쟁점물품의 조리 기능에
있어 중요한 요소임
- 특정 전자부품인 PCBA의 원산지만으로는
전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음
- 단순 조립 공정(부품 체결·연결 공정) 수행국과
PCBA 제조국(일부 시나리오에서 한국)은
쟁점물품의 원산지로 고려되지 않음

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5개 중 4개 요소의 원산지
(중국)를 전체 기기의 비특혜원산지로 판정

제조 공정



- 시나리오 A·B·C 별로 제조 공정이 수행된
국가(한국·중국) 상이

A	1	중국	PCBA 제조 공정
	2	중국	구성품 부품 체결·연결 공정
	3	한국	최종 공정 및 제품 선적
B	1	중국	PCBA 제조 공정
	2	한국	구성품 부품 체결·연결 공정
	3	중국	최종 공정 및 제품 선적
C	1	한국	PCBA 제조 공정
	2	중국	구성품 부품 체결·연결 공정
	3	중국	최종 공정 및 제품 선적

미국 원산지 결정

시나리오 A·B·C 모두
구성요소의 **원산지(중국)**를
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

원산지 CASE 2 볼 밸브

판정번호
N358193

물품 정보

용도

- 가정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철강제의 볼 밸브

부품

- 밸브 바디 중국산
- 스템 중국산
- 볼 중국산
- 밸브 마개 중국산
- 손잡이 중국산

CBP 판단

- CBP는 밸브의 원산지 판단 시 일반적으로 **밸브 바디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**
- 완성된 밸브 바디에 부품을 결합(삽입·압입 및 나사 체결)하는 공정은 단순 공정에 해당
- 또한, 부품 결합뿐만 아니라 밸브 바디 표면에 돌기를 형성하는 기계 가공 역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음

부품 조립 및 표면 돌기 형성 공정은 밸브 바디의 명칭·성질·용도에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음

제조 공정



- 중국산 부분품을 사용하여 캄보디아에서 **가공·조립**

- 1 밸브 바디와 밸브 마개 외부에 돌기 형성
- 2 밸브 바디에 스템, 볼 시트 및 볼을 압입
- 3 볼 시트를 밸브 마개에 압입
- 4 밸브 마개를 나사로 밸브 바디에 체결
- 5 핸들을 스템 위에 너트로 고정
- 6 제품 테스트, 레이저 마킹 및 포장

미국 원산지 결정

밸브 바디 **원산지(중국)**를
제품의 비특혜원산지로 판단